목포시 고시 제2017 - 147호
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 및 승객의 준수사항」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

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 및 승객의 준수사항(안)

2017년 8월 22일 목 포 시 장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,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, 선원, 낚시어선 및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영업시간) ①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.

- ②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도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4조(영업구역의 제한)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의 구역에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1.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, 해사안전법, 원자력진흥법, 항만법, 개항 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
- 2.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시설

제5조(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낚시어선의 안전 및 안전용품을 점검하여야 한다.
- 2. 구명조끼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내의 적절한 위치에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.
- 3.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구명장비 사용법을 알려주고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,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승객에 대하여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4.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할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의 상황발생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여야 한다.
- 5.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인명 대피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6.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7.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8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무인도,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싣고 입항하여야 하다.
- ②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쓰레기는 낚시어선 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.

- 2. 낚시도구나 미끼를 버리거나 버리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서 규정하는 포획금지 수산동물의 종류, 체장(체중) 및 포획 금지기간을 안내하여야 한다.
- ③ 승객을 승선시킬 경우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기상상황 변동 등으로 회항시 환불문제 등을 알린 후 운항하여야 한다.

제6조(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) ①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
- ②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는 안전운항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2. 구명조끼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
 - 3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
 - 4. 영업시간 외 항해, 영업구역 외 지역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- 5. 인명구조 장비나 그 밖에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는 행위
 - 6. 분뇨, 미끼, 낚시도구, 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
 - 7. 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서 규정하는 포획금지 수산동물의 종류, 체장(체중) 및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
- ③ 기상악화 등으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대피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응하여야 한다.
- ④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목포시 고시 제2002-61호(2002.07.29) 및 목포시 고시 제2006-48호(2006.07.07), 목포시 고시 제2013-152(2013.10.14)호, 목포시 고시

제 2015-182(2015.09.04)호는 폐지한다.